

#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(공포)

제 명: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개정사유

-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대응하여 현재 서구의회 회의 운영의 실정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함

주요내용

- 가. 후반기 의장·부의장 선거 기한 명시(안 제8조제2항)
- 나. 본회의에 직접 부칠 수 있는 안건의 유형 확대(안 제25조제4항)
- 다. 의정자유발언 제한시간 단축 (안 제33조의2제1항)
- 라. 회의록 공개 기한 명시 (안 제48조제1항)
- 마. 구정질문 서면질문·답변 관련 중복된 내용 삭제 (안 제66조의2제2항)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#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

송 승 환



2024년 12월 20일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 54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본문 중 “임기만료일전 5일에”를 “임기만료일 전일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4항 본문 중 “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 심사나 보고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처리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25조제4항제18호 “18. 본회의 비공개회의 동의”를 “18. 본회의 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9호 “19. 본회의 경찰관 파견요구 동의”를 “19.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연서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2의 제목 “(의정자유발언)”을 “(5분자유발언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10분 이내의 발언(이하“의정자유발언” 이라 한다)”을 “5분 이내의 발언

(이하“5분자유발언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,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정자유발언”을 각각 “5분자유발언”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 본문 중 “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”를 “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”로 한다.

제66조의2제2항 본문 중 “구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·답변, 일괄질문 서면답변, 서면질문 구두답변, 서면질문·답변 방식으로 하되,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, 질문순서는 일문일답, 일괄질문, 서면질문 순으로 한다. 다만,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방식은 병행할 수 없다”를 “구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·답변 방식으로 하되, 질문순서는 일문일답이 우선하며,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 없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일괄질문·답변과 서면질문 구두답변의 경우”를 “일괄질문·답변의 경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